

의안번호	제 344 호
의 결 연 월 일	2012년 6월 일 (제 311 회)

**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**

발 의 자	김영주 의원외 6명
발의연월일	2012년 6월 4일

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영주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44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2년 6월 4일

발 의 자 : 김영주, 최병윤, 김양희,
박종성, 유완백, 정지숙,
권기수

1. 제정이유

『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,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,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,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』의 개정(2012.2.27)에 따라 “충주시 중원문화체육관광 진흥재단”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"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" 설치 및 운영 지원

- "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"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한 행·재정적 협조 및 지원

→ "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" 설치·운영과 대회의 준비·운영에 필요한 행·재정적 협조 및 지원(안 제2조제1항)

나. 상위 법률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조항 삭제

→ 제2조제2항의 “충주시 중원문화체육관광 진흥재단”을 통한 지원을 삭제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『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,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,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,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』

나. 관련부서 협의 : 행정국 총무과와 협의함.

나. 예산조치 : 없음.

다. 기 타

(1) 입법예고 : 해당사항 없음.

(2) 규제심사 결과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.

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제2항을 삭제한다.

-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설치·운영과 대회의 준비·운영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협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행·재정적 지원 등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행·재정적 협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.</p> <p>② 도지사는 경기시설과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(이하 “대회”라 한다)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위원회가 속한 충주시 중원문화체육관광 진흥재단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③ ~ ④ (생략)</p>	<p>제2조(행·재정적 지원 등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설치·운영과 대회의 준비·운영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협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.</p> <p>(삭제)</p> <p>③ ~ ④ (생략)</p>
<p>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</p>	<p>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</p>

관계법령 발췌

-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,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,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,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

제4조(국가 등의 지원) ① 조직위원회는 국가·지방자치단체·공공기관(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·법인·단체 등에게 행정적·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,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

-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설치·운영과 대회의 준비·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